

제23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2018. 12. 5.~12. 20.

조 례 안 상 정

(조례 14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8-10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8-102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8-103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	17
2018-104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1
2018-105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018-106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2018-107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2018-108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5
2018-109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2018-110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7
2018-111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2018-112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2018-113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5
2018-114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0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우리 군 인구증가대책 추진 강화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전입장려를 위하여 생활관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제6호)

둘째아이 이상 50만원 ⇒ 첫째아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50만원

나.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안 제20조제1항제9호)

학기별 30만원 이내, 재학 중 최대 4번,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375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해당부서와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15.~11. 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령화 및”을 “고령화,”로 “군”을 “거창군”으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을 “지원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를 “셋째 이후 태아·출생아 건강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둘째아이 이상”을 “둘째 이후”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자들”을 “사람을”로 한다.

제5조 제목 “(지원내용 및 규모)”를 “(지원 내용과 규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둘째아이 이상 50만원”을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셋째 자녀부터”로 한다.

제7조제1호·제2호 중 “지급한다.”를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추가지급 할 수 있다.”를 “추가지급 가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2회 실시한다.”를 “두 번 집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회 전액 지급한다.”를 “한 번에 전액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를 “태아·출생아”로 “지급한다.”를 “분할지급”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신청 및 지원절차)”를 “(신청과 지원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부등록”을 “임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참하여”를 “가지고”로 한다.

제11조 제목 “(지원대상 및 기준)”을 “(지원 대상과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둘째아이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둘째 이후 자녀 중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유아양육비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최초 영유아양육비 지급하는 달에 소급 분을 함께 지원한다. 다만 전입세대 일 때에는 전입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1. 둘째 자녀: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지급
2. 셋째 자녀부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5년간 지급

제13조 제목 “(신청 및 지원절차)”를 “(신청과 지원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람은”을 “사람은 출생 또는 전입 후 60일 이내에”로 한다.

제20조 제목 “(지원내용 및 업무관장)”을 “(지원내용과 업무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8호 중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및”을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다만, 제8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 경우에는 예외(인구교육과)
 - 가. 학기별 30만원 이내
 - 나. 재학 중 최대 4번

제22조 제목 “(환수조치 및 기록관리)”를 “(환수조치와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본”을 “이”로 한다.

제23조 중 “본”을 “이”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로 “예

산의 범위 안”을 “예산 범위”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6호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양육비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9호 개정규정은 2019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u>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전입장려 지원” 등으로 구분·시행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장려금”이란 부 또는 모가 <u>군</u>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u>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u>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2.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u>셋째 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과</u> 관련하여 <u>군과</u>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생략) 4. “영유아양육비”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둘째 아이 이상</u>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5.~9. (생략) 10.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u>군내에</u>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자</u>를 말한다. 11. (생략)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군수는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u>거창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 제></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장려금”이란 부 또는 모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u>자녀를</u>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2.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u>셋째 이후 태아·출생아 건강을</u> 위하여 <u>군과</u> 협약한 업체의 건강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영유아양육비”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둘째 이후</u>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5.~9. (현행과 같음) 10.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u>군내에</u>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사람</u>을 말한다. 11. (현행과 같음) <p>제5조(지원 내용과 규모) 군수는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예산 범위에서</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1.~5. (생략)

6. 출산장려금: 둘째아이 이상 50만원
(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7.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250만원 이내

제7조(지원방법) 제5조 각 호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신 축하 기념품은 보건소 임부 등록 시 지급한다.

2. 임신부 영양제는 최대 7개월분을 지급한다.

3. 엽산제의 경우 임신부는 개월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가임여성은 5개월분을 일괄지급하되 임신이 될 때까지 추가지급 할 수 있다.

4. 삭제 <2009.6.10>

5.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2회 실시한다.

6. 출산장려금은 신청서에 따라 1회 전액 지급한다.

7.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250만원 이내에서 5년간 매월 분할지급한다.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또는 가임여성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5호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둘째아이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부모가

1.~5. (현행과 같음)

6. 출산장려금: 50만원(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7.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셋째 자녀부터 250만원 이내

제7조(지원방법) 제5조 각 호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신 축하 기념품은 보건소 임부 등록 시 지급

2. 임신부 영양제는 최대 7개월분을 지급

3. 엽산제의 경우 임신부는 개월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가임여성은 5개월분을 일괄지급하되 임신이 될 때까지 추가지급 가능

5.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접종

6. 출산장려금은 신청서에 따라 한 번에 전액 지급

7.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250만원 이내에서 5년간 매월 분할지급

제8조(신청과 지원절차)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산부 또는 가임여성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5호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 대상과 기준) 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둘째 이후 자녀 중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양육비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둘째아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한다.

2. 셋째아이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 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

제1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영유아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①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7. (생략)

8.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인구교육과)

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나.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번)

<신 설>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양육비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최초 영유아양육비 지급하는 달에 소급 분을 함께 지원한다. 다만 전입세대 일 때에는 전입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1. 둘째 자녀: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지급

2. 셋째 자녀부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5년간 지급

제13조(신청과 지원절차) ① 영유아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 또는 전입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내용과 업무관장) ①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8.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전입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인구교육과)

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나.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번)

9.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다만, 제8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 경우에는 예외(인구교육과)

9.~11.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이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9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대학생은 제외한다.

제22조(환수조치 및 기록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 조례에 규정된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 하여야 하며, 각종 지원 내용과 환수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유지·관리 하여 한다.

제23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학기별 30만원 이내

나. 재학 중 최대 4번

10.~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이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10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대학생은 제외한다.

제22조(환수조치와 기록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 조례에 규정된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 하여야 하며, 각종 지원 내용과 환수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유지·관리 하여 한다.

제23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출산장려금 : 첫째아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50만원(안 제5조제6호)

나.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안 제20조제1항제9호)

- 1) 학기별 30만원 이내
- 2) 재학 중 최대 4번
- 3)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출산장려금	75	75	75	75	75	375
	대학생 생활관비	300	300	300	300	300	1,500
	소계	375	375	375	375	375	1,875

○ 산출기초 : 2018년 인원 기준 추정

- 첫째아이 150명 × 50만원 = 75백만원
- 기숙사생 500명(50퍼센트) × 60만원 = 300백만원

3. 관련의견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와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군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손 용 모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0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청년창업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와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2조)

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일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규정 신설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직접 장소를 지정신청할 경우 신청서식 등을 신설함(안 제3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1. 1.~11. 2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장소 또는 시설: 행사

- 주최나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주변 환경,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등) ① 군수는 거창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나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0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면서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2023년 12월 31일

나. 법령 재기재사항 등 정비함(현행 제6조, 제7조,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제12687호, 2014. 5. 28.)제4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2,756백만원 확보 예정

국비 200백만원, 도비 60백만원, 군비 2,496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를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3조 제목 “(세입)”을 “(설치와 세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거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목 “(준용규정)”을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u></p> <p><u>제3조(세입)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u></p> <p>1.~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u>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과장을 징수관 및 재무관으로 산업단지 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u></p> <p><u>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u></p> <p><u>제9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u> <u>② 사업자가 조성부지 분양대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u></p>	<p><u>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u></p> <p><u>제3조(설치와 세입 등) ① 거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1.~6. (현행과 같음) <u>② 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u><삭제></u></p> <p><u><삭제></u></p> <p><u>제9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u></p> <p><u><삭제></u></p>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지출
- 관련조문 :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국비		200	200	200	200	200	1,000
	도비		60	60	60	60	60	300
	군비		2,496	2,500	2,500	2,500	2,500	12,496
	소계		2,756	2,760	2,760	2,760	2,760	13,796
총 비용			2,756	2,760	2,760	2,760	2,760	13,796

3. 관련 의견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19년도 예산 2,756백만원 확보 예정

작성자 : 기업지원과장 임 영 수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0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법령 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중복·재기재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부칙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중복·재기재한 사항 삭제 정비함
-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 설정함(안 제5조)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와 부칙(제12687호, 2014. 5. 28.) 제4조, 「의료급여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 1,006백만원 확보 예정
국비 191백만원, 도비 48백만원, 군비 767백만원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전부 반영함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이하 “기금담당관”이라 한다)은 「의료급여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영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에게는 기금부담액을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거창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별지 서식]

영수필통지서				거창군 복지정책과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금	부당이득금 <input type="checkbox"/> 구상금 <input type="checkbox"/> 대지급금 <input type="checkbox"/>				
상환금 내용	총액	기 상환액	미 납 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납입통지서				거창군 복지정책과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금	부당이득금 <input type="checkbox"/> 구상금 <input type="checkbox"/> 대지급금 <input type="checkbox"/>				
상환금 내용	총액	기 상환액	미 납 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영 수 증				거창군 복지정책과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금	부당이득금 <input type="checkbox"/> 구상금 <input type="checkbox"/> 대지급금 <input type="checkbox"/>				
상환금 내용	총액	기 상환액	미 납 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1. 부과근거

-부당이득금·구상금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741조)

-대지급금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2. 납부장소

-농협 전지점

3. 체납처분 등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부과근거

-부당이득금·구상금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741조)

-대지급금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2. 납부장소

-농협 전지점

3. 체납처분 등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부과근거

-부당이득금·구상금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741조)

-대지급금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2. 납부장소

-농협 전지점

3. 체납처분 등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의료급여기금 운영
- 나.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총 비용		767	787	807	827	827	4,015
세출	군비	767	787	807	827	827	4,015

- 산출기초 : 진료비 군비부담금(전체진료비 4퍼센트), 부당이득금 반환금, 예금이자

3. 관련 의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 수행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2019년도 군비 767백만원 소요
- 2019년 전체예산 1,006백만원 확보 예정
(국 191, 도 48, 군 767)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강 준 석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0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소외자의 관광지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제4항)

- 1)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2)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하나만 적용

나. 시설이용료 반환기준 추가함(안 별표 2)

계약체결 그날 예약을 취소할 때 : 이용료 전액 반환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6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12.~11. 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반영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종전 제2조) 중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를 “수승대관광지”로 “일대(297,679제곱미터)”를 “일대 297,679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종전 제4조)제5호 중 “관광지”를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라 한다.

제7조를 제4조로 한다.

제8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 제8조)에 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

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주민등록법」 상 25세 미만 미혼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종전 제9조) 제목 “(입장거절 및 퇴장)”을 “(입장거절과 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을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집단놀이(캠프파이어)”를 “집단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야영 및”을 “야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을 “천재지변”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남/여)”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297,679제곱미터)로 한다.</p>	<p>제3조(위치) 수승대관광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 297,679제곱미터로 한다.</p>
<p>제3조(적용범위) 관광지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삭 제></p>
<p>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생략) 5. "시설"이란 관광지에 있는 주차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썰매장, 축제극장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현행과 같음) 5. "시설"이란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에 있는 주차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썰매장, 축제극장을 말한다.</p>
<p>제7조(시설이용료) (생략)</p>	<p>제4조(시설이용료) (현행 제7조와 같음)</p>
<p>제8조(시설이용료 감면) ①~② (생략) <신 설></p>	<p>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사람 고성방가, 집단놀이(캠프파이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관광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사람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법」상 25세 미만 미혼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p><신 설>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p> <p>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사람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관광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취사행위 등을 하는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

현 행	개 정 안
<p>6.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p> <p><u>제10조~제14조</u>(생략)</p>	<p>6.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p> <p><u>제7조~제11조</u>(현행 제10조부터 제14조와 같음)</p>

[별표 2]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공익상 필요 또는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료 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u>계약체결 그날 예약을 취소할 때</u>	<신 설>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8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5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u>그날</u> 예약을 취소할 때	반환하지 않음

- 반환기준 시간은 24시로 한다.
-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변경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 월일	(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	사무실	
				자택	
행사의 명칭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시설사용				
	부속설비				
	그밖의사항				
변 경 사 유					
<p>「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 귀하</p>					

[별지 제1호의3서식]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취소 신청서

공연.행사명			
사용일자		사용장소	
취소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또는 대표자명(남 / 여)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8-10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채용정보 제공,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박람회·설명회 개최, 청년 취업·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 등

다.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 사업참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업무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85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9. 28.~10.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3.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4.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5.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축제 참가,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6.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취업·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
7. 학력·경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
8.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9.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지원
10.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단체·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참여 단체 등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업 등에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 시행(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구인·구직 만남의 날	5	5	5	5	5	25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6	6	6	6	6	30
	일자리박람회	10	10	10	10	10	50
	찾아가는 지역 일자리센터 운영	4	4	4	4	4	20
	지역형 맞춤일자리사업	160	160	160	160	160	800
	소 계	185	185	185	185	185	925

○ 산출기초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1회 × 5백만원 = 5백만원
-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 콘테스트 개최 2백만원, 시상금 4백만원
- 일자리박람회 개최 : 1회 × 10백만원 = 10백만원
- 찾아가는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 운영비 2.5백만원, 참석자 보상금 1.5백만원
- 지역형 맞춤형일자리 사업 : 인건비 90백만원, 교제 및 재료비 10백만원,
민간형 일자리사업 지원 60백만원

3. 관련의견 :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작성자 : 경제교통과장 김 진 태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0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면서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발전소주변지역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2023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제12687호, 2014. 5. 28.)제4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국비 3천만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불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2조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와 세입) 거창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의”를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경비 및”을 “경비와”로 한다.

제5조 제목 “(준용)”을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 및 운영”을 “관리·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3조(세입)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p> <p>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p>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삭 제></u></p> <p>제2조(설치와 세입) 거창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u><삭 제></u></p> <p>제3조(준속기한) 특별회계 준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로 한다.</p> <p>제5조(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로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 예산은 국비 3천만원으로 준비는 해당사항 없음

4. 작 성 자

경제교통과장 김 진 태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0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어 이를 계속 존속시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2023년 12월 31일

나. 상위법령 재기재·중복 규정 삭제·정비함(안 제3조, 현행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제12687호, 2014. 5. 28.) 제4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833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불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와 존속기한) ① 거창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의”를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조제1항 및”을 “법 제7조제1항제3항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 회계에 세입된 금액의 범위 내에 한함”을 “특별회계에 세입된 금액 범위에 한정함”으로 한다.

제5조,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 제7조)제1항 중 “제3조제1호제2호제3호의”를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종전 제8조) 중 “이 회계를 운영”을 “특별회계를 운용”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 제10조) 제목 “(준용규정)”을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준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2조(설치와 존속기한) ① 거창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세입)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에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4. 거창군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5. 정부의 보조금	
6. 거창군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의 설치·폐지	1. 법 제7조제1항·제3항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의 설치·폐지
2.~3.(생략)	2.~3.(생략)
4.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장비운영비, 과태료 부과	4.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장비운영비, 과태료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 과태료 중 이 회계에 세입된 금액의 범위 내에 한함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출납명령관은 건설교통과장, 출납 공무원은 교통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회계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회계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7조(세입징수) ① 제3조제1호·제2호·제3호의 수입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를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9조(보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하고자 할 때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 과태료 중 특별회계에 세입된 금액 범위에 한정함

<삭 제>

<삭 제>

제5조(세입징수)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를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삭 제>

제7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관리, 운영 : 제1조(목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군비	134	134	134	134	134	670
	계	134	134	134	134	134	670

3. 관련 의견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비, 인건비 등 지출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019년도 예산 833백만원 : 주차장 설치·관리·운영 관련 지출, 예비비

작성자 : 경제교통과장 김 진 태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0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 중인 부르미택시 비용지원 대상자를 부르미택시사업자로 변경하여 부르미택시 운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르미택시사업 지원대상자 변경에 따른 제명과 목적조항 개정
- 나. 부르미택시 비용신청자를 변경함(안 제4조)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 ⇒ 부르미택시 사업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38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영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르미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의 대표자”를 “부르미택시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청자”를 “제1항에 따라 부르미택시 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청자”를 “부르미택시 사업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부르미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4조(비용의 신청)</u> ①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u>제6조(사후관리)</u>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부르미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p>	<p><u>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영 지원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르미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4조(비용의 신청)</u> ① 부르미택시 사업자는 주민들이 그달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르미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르미택시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u><삭 제></u></p>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 비용의 신청, 제5조 비용지원 결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 예산은 38백만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경제교통과장 김 진 태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1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면서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3조)
2023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제12687호, 2014. 5. 28.)제4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4,551백만원 확보예정
국비 4,472백만원, 군비 79백만원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4조(종전 제3조) 제목과 본문 중 “결산 및”을 “결산.”으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u>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p><u>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u>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p> <p>1. <u>재무관: 특별회계업무 담당 부서장</u></p> <p>2. <u>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u></p>	<p><u>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u></p> <p><u>제3조(존속기한)</u>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u>제4조(예산편성·결산·운용)</u>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p><u><삭 제></u></p>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

나. 관련조문 : 제2조(설치)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국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등		4,472	4,800	5,000	5,200	5,200	24,672
군비	예비비 등		79	79	79	79	79	395
계			4,551	4,879	5,079	5,279	5,279	25,067

3. 관련 의견

매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시행

작성자 : 환경과장 최 정 제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1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면서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2023년 12월 31일
- 나. 상위법령 중복·재기재 규정 정비함(현행 제2조·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제12687호, 2014. 5. 28.)제4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733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과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거창군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중 “이 회계의 세출은”을 “특별회계 세출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중전 제6조)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중전 제8조) 제목 “(준용)”을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준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p> <p>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p> <p>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p> <p>제5조(이월금 및 집행잔액 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년도 계획사업 시행 완료후의 집행잔액은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p>	<p>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거창군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p> <p><삭 제></p>

<p><u>제6조(금고의 설치)</u>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p>	<p><u>제5조(금고의 설치)</u>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p>
<p><u>제7조(회계공무원 지정)</u> 이 회계의 출납명령관은 건설교통과장, 출납공무원은 건설담당주사로 한다.</p>	<p><삭 제></p>
<p><u>제8조(준용)</u>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u>준한다</u>.</p>	<p><u>제7조(관리·운용)</u>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u>따른다</u>.</p>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
- 나. 관련조문 : 제4조(세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군비	733	733	733	733	733	3,665
세출	소계(a)		733	733	733	733	733	3,665
	총 비용(a)		733	733	733	733	733	3,665

3. 관련 의견

「댐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득증대사업, 균형 발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019년 합천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733백만원 확보예정

작성자 : 건설과장 전 정 규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1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p>1. 제안이유</p>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 없이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가. 법령 위임 없이 법령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축소하여 주민의 이용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 삭제함(안 제20조)</p> <p>1) 조례 : 현수막 게시기간 10일 ⇒ 삭제</p> <p>2) 법령 : 현수막 게시기간 15일 이내</p> <p>나. 법령 위임범위 보다 낮게 규정된 과태료금액 조정함(안 별표 6)</p> <p>도로 입간판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현수막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과태료 금액 : 33만원 이상 ⇒ 35만원 이상</p> <p>3. 참고사항</p> <p>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5조, 별표 1, 별표 8</p> <p>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p> <p>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p> <p>라. 기타사항</p> <p>1) 입법예고</p> <p>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p> <p>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p> <p>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p> <p>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p> <p>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p>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 한다.

별표 6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0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영</u> <u>제8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기간</u> <u>은 지정게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u> <u>하여 10일 이내 한 번만 할 수 있다.</u> <u>다만, 표시기간 종료일부터 10일 경과</u> <u>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다.</u></p> <p><u>②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u>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u> <u>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u> <u>할 수 있다.</u></p>	<p><삭 제></p>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p>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금지광고물 제작·표시(제5조제2항제3호)</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p> <p>가) 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미만 - 0.8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 <p>나) 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미만 - 1.3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미만 - 1.6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p>다) 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미만 - 2.3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미만 - 2.6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p>라) 면적 3제곱미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0.5제곱미터당 <p>2) 도로 외의 경우</p> <p>가) 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미만 - 0.8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 <p>나) 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미만 - 1.3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미만 - 1.6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p>다) 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p>법 제20조 제1항제1호·제1호의2</p>	<p>개당 12만원</p> <p>개당 17만원</p> <p>개당 25만원</p> <p>개당 35만원</p> <p>개당 42만원</p> <p>개당 58만원</p> <p>개당 67만원</p> <p>개당 92만원</p> <p>개당 117만원</p> <p>개당 130만원</p> <p>개당 15만원을 더한 금액</p> <p>개당 7만원</p> <p>개당 10만원</p> <p>개당 13만원</p> <p>개당 17만원</p> <p>개당 25만원</p> <p>개당 42만원</p>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미만 - 2.6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3제곱미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0.5제곱미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당 50만원 개당 58만원 개당 75만원 개당 80만원 개당 8만원을 더한 금액
<p>나. 현수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제곱미터 미만 -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미만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1제곱미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3만원 장당 17만원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 장당 35만원 장당 50만원 장당 58만원 장당 80만원 장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p>다. 벽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 광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5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3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67만원
라. 1년 이상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

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8-11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위임된 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함(안 제3조~안 제8조)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주민협의체 지원

다. 전문가 활용을 규정함(안 제9조)

라.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마. 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9조·제11조·제28조·제30조의2·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조·제11조·제14조·제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9. 12.~10. 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거창군 계획 조례」에 따른 거창군 계획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전담조직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거창군과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지원
3.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문화재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상인조직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의 연계와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과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7조(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2. 공공기관·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상공회의소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4.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행정기관 공무원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④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8조(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
2. 제1호에 따른 계획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제9조(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조건)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연체이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자의 조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용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2조(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text{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 + \text{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1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시키고자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4조)

2023년 12월 31일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회계와 기금 간 중복회계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여 기금규정 삭제·정비함

다. 농업발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제12687호, 2014. 5. 28.)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79억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1. 2. ~11. 2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불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제3조(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6조(융자지원 대상사업과 기준)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재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1.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 지원사업
2.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지원사업
3. 축산환경개선 시설 지원사업
4.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
5. 농업재해(「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해 복구사업
6. 농산물 과잉 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한도액은 농업경영 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 5천만원 이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유지 등을 위한 자금(이하 “생산자금”이라 한다)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금융기관과 협약 등) ① 군수는 농업발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융자금 대출·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생산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③ 그 밖에 융자금 대출, 융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8조(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①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은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융자지원 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
2.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산림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기관의 대표
2. 농업인단체·조직 대표나 생산자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로 본다.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 제6조 용자지원 대상사업과 기준, 제10조 농업발전 자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나. 비용발생 요인

- 1)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법인의 농업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1퍼센트 이자로 매년 30억규모의 용자금 대출 시행, 선정된 금융기관에 1퍼센트 수수료 지급
- 2)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 3) 2013년까지 농협자금으로 용자사업 시행, 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2021년까지 지급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단위: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세 출	용자금지원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위원회수당	4,400	4,400	4,400	4,400	4,400	22,000
	이자차액 보전금	30,000	20,000	10,000	-	-	60,000
	예비비	3,009,558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9,558
	소계	6,043,958	6,024,400	6,014,400	6,004,400	6,004,400	

- 예비비 : 농업재해 등 예측하지 못하는 긴급한 재난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비 편성

나. 추계의 결과

2019년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산 179억원 편성 요구

작성자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응 록